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4 - 27 - 089호(사건번호 : 201312조사060)

안 건 명 (주)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관련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
강원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154-25
대표이사 우영상

의결연월일 2014. 7. 9.

주 문

1. 피심인은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피심인이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를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PP에게 우편으로 개별고지하고,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향후 미지급·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금 액 : 23,170,000원
 -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 과

- '13. 11. 28 ~ '13. 12. 30 :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점검
- '13. 12. 31 ~ '14. 2. 5 : 사건 인지 및 사실 조사
- '14. 2. 6 ~ '14. 6. 4 : 조사자료 분석 및 법률자문
- '14. 6. 5 ~ '14. 6. 16 : 시정조치(안) 송부 및 의견 조회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은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 피심인 현황 >

('13. 12월말 기준)

가입자수(명)			매출액	순이익	방송구역	최초 허가일
아날로그	디지털	계				
90,630	51,072	141,702	217억원	-34억원	강원 원주·횡성· 평창·영월·정선	'02.11

2.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은 피심인이 체결된 프로그램 공급계약('12년, '13년)에 따라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13.12.31 ~ '14.2.5까지 담당자를 인터뷰하고 계약서 및 입금증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은 '12, '13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12.1.18, '13.7.15)에 따라 매 익월말까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12년도 136개 PP에게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3,403,270천원 중 203,045천원(6.0%)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3,200,225천원(94.0%)을 '12.11~'13.6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은 331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평균 지연지급기간 = $\sum(\text{각 지연지급건별 지연일수}) \div \text{전체 지연지급건수}$

'13년도 135개 PP에게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 3,542,010천원 중 1,509,710천원(42.6%)만 정상지급하고 134개 PP의 사용료 2,032,299천원(57.4%)을 '13.7~'13.10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함으로써 평균 지연지급기간은 118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제5조) : PP는 매월 프로그램 사용료를 SO에게 청구하고, SO는 청구서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동 금액을 PP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피심인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현황 >

('14. 6. 30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대상PP 채널수	평균 지연 지급 기간	총 계약금액 (A)	총 지연지급액 (B)	지연지급액 비율(B/A)
'12년	136	331일	3,403,270	3,200,225	94.0%
'13년	134	118일	3,542,010	2,032,299	57.4%
합 계		449일	6,945,280	5,232,524	75.3%

또한 피심인은 '12년, '13년도 프로그램 사용료 5,232,524천원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PP로부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방송수신료를 받으면서도 프로그램 공급 계약에 따라 당연히 지불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PP에게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제1항 [별표2의2] II-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 법규 >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2] :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II.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적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또한 피심인이 '12년과 '13년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당사자간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유형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동 행위가 향후 재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PP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계약조항의 변경

피심인은 방송법 제85조의2제2항에 의거, 피심인은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피심인이 '14년도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를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방송법 제85조의2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PP에게 우편으로 개별고지 하고, 자체 지역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음성과 자막으로 고지하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표 방식·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업무처리 절차 개선

피심인은 방송법 제85조의2제2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향후 미지급·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방송법 제85조의2제2항에 의거,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85조의2 및 제109조, 동법 시행령 제63조의3 및 제70조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3호, 이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방송법령에 의거하여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액 (이하 “관련매출액”)과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관련매출액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에 따른 관련매출액이란 방송사업자들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 판매수익,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 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으로 이에 따른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178억 2,186만원이다.

<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

(단위 : 만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평균
매출액	1,726,619	1,869,141	1,750,799	1,782,186

< ② 과징금 부과 상한액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3조에 의거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관련매출액의 2/100로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3억 5,644만원이다.

< ③ 기준금액 :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4조에 의거 기준금액은 관련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이다. 부과기준율은 방송법령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하는데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 과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 약함”으로 판단하되 피심인의 프로그램 사용료 ‘총 계약금액’, ‘지연지급 금액’과 ‘지연지급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반의 정도(3.00%)가 조사대상 7개 SO의 평균(2.13%)을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 범위 (0.6% 이하) 내에서 0.2%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금액은 3,564만원이다.

나. 과징금의 결정

이상의 기준금액에 대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에 의거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50% 이내에서 필수적 조정을 하고, 동 기준 제7조에 의거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50% 이내에서 추가적 조정을 하여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필수적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12. 3. 1일 최초 개시되어 '13. 10. 31일 종료됨으로써 위반행위 기간은 1년 초과 2년 이내에 해당되어 기준금액에 30%를 가중한다.

추가적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20%를 감경하고 조사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함으로써 30%를 감경하여 총 50%를 감경한다.

이상에 따른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2,317만원이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결 론

상기 피심인의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 7. 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성 준



부위원장

허 원 제



위원

김 재 홍



위원

이 기 주



위원

고 삼 석

